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96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김용판·김성원·김영식

이주환 · 강기윤 · 박대수

하영제 • 박성민 • 서일준

노용호 • 백종헌 • 서범수

박덕흠 • 강대식 • 전봉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대상재산에는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상자산을 증식하거나 가상자산을 재산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등 거래 내역을 주식에 준하여 신고하는 등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5).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을 "채무·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및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15. 가상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거래내역"을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의"를 "주식 및 가상자산의"로, "주식거래"를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거래내역"을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으로, "주식거래의"를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거래"를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등"을 "신용정보회사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②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	3
채권· <u>채무 및 지식재산권(知</u>	<u>채무・지식재산권(知</u>
識財産權)	識財産權) 및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신 설></u>	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	3
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	
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5. 가상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u>주식거래내역</u> 의 신고)	저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	
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의 <u>주식의</u> 취	
득 또는 양도에 관한 <u>주식거래</u>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u>주식거래내역</u> 신고 시 신고대상 <u>주식거래의</u>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u>주식거래</u>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저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

세6조의2(<u>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u>
<u> 내역</u> 의 신고) ①
주식 및 가상자산의 -
<u>주</u>
<u>식 및 가상자산 거래</u>
②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
③ 주식 및
<u> 가상자산 거래</u>
④ (현행과 같음)
ll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

항, 제6조제1항 ·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 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 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 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 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u>신용</u>
정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있다.

이하 같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